

[특허분쟁] 자체 탈수식 판형 대걸레 특허침해 여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

3758 판결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확인대상발명
1	대걸레 막대와, 걸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와, 상기 대걸레 막대에 설치되고 상기 대걸레 막대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브와,	대걸레 막대(1)와, 걸레가 장착되는 배면을 구비하고, 상기 대걸레 막대의 끝단에 활동하게 연결되는 판형 대걸레 헤드(2)와, 상기 대걸레 막대(1)에 설치되고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는 조정 슬리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가 관통하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5)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에 장착된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6)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3)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4)를 포함하고,</p>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가 관통하는 개구(5)를 구비하고, 상기 개구(5)의 바닥부에 위치하여 상기 개구(5)로부터 관통되는 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에 장착된 걸레의 수분을 짜내기 위한 탈수 유닛(6)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슬리브(3)와 고정되게 연결되는 조정 헤드(4)를 포함하고,</p>
2	<p>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a, 7b)이 설치되어 있고, 상기 가이드 블록(7a, 7b)의 양측에는 양측으로 연장하는 가이드 날개(8)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는 2개의 연결 스트립(9)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2개의 연결 스트립(9)의 마주하는 측면에는 위치결정 스트립(10)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10)은 상기 가이드 날개(8)와 상기 대걸레 막대(1) 사이에 끼워서 설치되어 상기 위치결정 스트립(10)이 상기 가이드 날개(8)의 위치 한정 하에서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하도록 하고,</p>	<p>상기 대걸레 막대(1)에는 가이드 블록(7a, 7b)이 설치되고, 상기 가이드 블록(7a, 7b)의 양측에는 가이드 날개부(8)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조정 헤드(4)와 상기 조정 슬리브(3)는 연결 스트립(9)에 의해 고정되게 연결되고, 상기 조정 슬리브(3) 내부에는 위치결정부(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위치결정부(10)은 상기 대걸레 막대(1)를 따라 상대적으로 슬라이딩되고,</p>
3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6)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4)에 세워 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를 통하여</p>	<p>상기 판형 대걸레 헤드(2)는 상기 개구(5)를 관통하여 상기 탈수 유닛(6)에 의해 물을 짜낸 후, 상기 조정 헤드(4)에 세워 놓이게 되고 상기 조정 헤드(4)를 통하여</p>

	여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	지지면에 지지 설치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을 특징으로 하는 자체탈수식 판형 대걸레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 및 위치결정부가 각각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①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에 양측으로 연장하여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날개부는 가이드 블록의 정상부가 아닌 가이드 블록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다. ②구성요소 2의 위치결정 스트립은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를 고정되게 연결하는 2개의 연결 스트립의 마주하는 측면에 설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단일의 연결스트립에 의해 조정 헤드와 조정 슬리브가 고정되게 연결되고, 위치결정부는 조정 슬리브 내부에 홈이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③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는 위치결정 스트립과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하게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 블록, 가이드 날개부 및 조정 슬리브 내부에 설치된 위치결정부는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슬라이딩을 하는 동안 어떠한 구성요소와도 접촉하지 않을 뿐더러 가이드 날개부가 위치결정부와 배합됨으로써 가이드 블록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전체적인 슬라이딩에 대하여 가이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

다.

④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2항 발명은 1항 발명에 조정 슬리브의 최고 슬라이딩 위치를 한정하는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을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은 대걸레 막대에 위치결정 돌출점을 설치하고, 조정슬리브에 위치결정 홈을 설치하여 조정 슬리브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위치결정 돌출점을 위치결정 홈에 체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가 전체적으로 위치결정되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피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조정 슬리브에 설치된 위치결정부는 U자 모양의 홈에 가이드 블록이 삽입 결합되어 조정 슬리브가 최상부에서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가이드 블록 양측에 구비된 '가이드 날개부'라고 명명된 구성도 대걸레 막대에 설치된 돌출된 부분인 가이드 블록을 통해 조정 슬리브 상단부 내측면에 형성된 홈인 위치결정부에 착탈 가능하도록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위치결정부와 체결되어 조정 슬리브의 최고 위치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성요소

2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위치결정 유닛의 구성 중 하나인 '대걸레 막대에 설치된 위치결정 돌출점'과 '조정슬리브에 설치된 위치결정 홀'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슬라이딩을 정지시키기 위한 구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이드 블록, 가이드 날개 및 위치결정 스트립이 조정 슬리브와 조정 헤드의 슬라이딩을 원활하게 안내하는 구성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758 판결

변리사 23년/변호사 15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